

대 법 원

2005. 5. 12. 원본영수	인
2005. . . 판결송달	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05다16324 보험금

원고, 상고인 1. 노○○

2. 박○○

원고들 주소 대구 서구 ○○

원고들 송달장소 같은 동 ○○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화

피고, 피상고인 ○○ 주식회사

서울 강남구 ○○

대표이사 ○○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광

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05. 1. 19. 선고 2004나1487 판결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5. 5. 12.

재판장	대법관	윤재식 _____
	대법관	강신욱 _____
주 심	대법관	고현철 _____
	대법관	김영란 _____